

[별표 9]

안전점검의 종류 및 내용
(제21조제2항 관련)

종 류	점검 내용
종합점검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국방 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적정성 나. 해당 기관의 안전·보건 관리조직 또는 인력과 그 직무의 적정성 다.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수칙매뉴얼 등 지침서 내용의 적정성 라. 주기적 안전교육의 실시 여부 및 내용의 적정성 2. 국방안전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(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) 3. 임무수행·부대활동·작업 조건 및 방법에 대한 평가 4.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장비·물자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나. 폭발성·물반응성·자기반응성·자기발열성 물질, 자연발화성 액체·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다. 전기·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라. 추락, 붕괴, 낙하, 익사 등으로 인한 위험성 마. 그 밖에 기계·기구·설비·장치·구축물·시설물·원재료 등에 의한 위험성 바. 관리 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·습도·환기·소음·진동·분진,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5. 보호구, 안전·보건장비 및 임무수행·부대활동 환경 개선 시설의 적정성 6. 유해물질의 사용·보관·저장,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, 소속 인원 공지 및 경고 표시 부착의 적정성 7. 그 밖에 임무환경 및 소속 인원의 건강 유지·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안전점검	종합점검 내용 중 제2호·제3호, 제4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5호 중 안전 관련 사항
보건점검	종합점검 내용 중 제2호·제3호, 제4호 바목, 제5호 중 보건 관련 사항, 제6호 및 제7호